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시 제재 조항 신설〉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68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시 제재 조항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4월 10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 2 및 제41조).

Ⅲ. 검토의견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시 제재 조항 신설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이 플라스틱 의무사용 비율 등을 정한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명단과 고시 위반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5조의2제3항),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8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생략) <u><신설></u>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제33조의3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자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u>사업자가</u>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u>지침</u> 을 위반한 내용	③ ----- 제1항 및 제2항----- 자가 ----- ----- ----- <u>지침 및 고시</u> 를 ---

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u>지침</u>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략) 8. <u>제25조의2제2항</u>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 16. (생략) ③·④ (생략)	----- -----. - <u>지침 및 고시</u>를 ----- ----- -----.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8. <u>제25조의2제3항</u>----- ----- ----- 9. ~ 1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및 재생원료 확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¹⁾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 촉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하는 규정 이 신설²⁾되었고,

1) 유럽연합 : 식품용 페트병 2025년 25% → 2030년 30% 사용 목표

2) 제422회 국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5.3.25. 공포, 9.26.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①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환경부 고시³⁾에서 연간 5,000톤 이상을 생산하는 먹는샘물·음료류 페트병 최종 제품생산자에 대해 2026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 10%를 달성하도록 하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진행하였음.

[법령 및 환경부 고시 비교]

자원재활용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고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	5천톤/년 이상 먹는샘물·음료류 페트병 최종 제품생산자	‘26년 10% 사용목표를 설정

* 시행령 입법예고(‘25.4.9~5.20) 및 관련 고시 행정예고(‘25.4.9~4.30)

그러나 현행 규정은 실질적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법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개 업체로, 이번 법령이 시행될 경우 약 20,000톤의 재생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추계됨.

문 의 처
02)6788-5546